

상식 같은 기술도 특허가 된다

최

근 몇 년간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심도가 높아져,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 부품소재관련 기술개발 과제, 기술지원 사업, 투자연계, 벤처기업 육성 지원 등의 기사나 공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산업의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하자는 매우 고무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시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짊어봐야 할 때가 되었다. 지적재산권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에서도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중요한 특허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품소재 산업의 관련영역은 중간제품에서 완제품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관련 제품의 디자인, 설계 및 제조장비, 공정기술, 재료 이외에 전자판매 방식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자사 제품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과연 안전한지 따져보면, 실로 심각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흔히 “돼지는 키워서 잡아먹는다”란 말로 비유한다. 즉, 침해한 회사나 제품이 상당한 정도의 매출과 신장이 확실하여, 협상에 순응하지 않으면 큰 치명타를 입을 정도까지 성장한 후에야 침해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할 수 있다. 바로 이럴 때에 특허침해소송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공격에 주의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원래는 사업화 내지 제품 개발 할 때부터,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저촉 여부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사전에 협상 내지 계약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나, 대부분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정도를 찾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부품소재 제품에서 제일 먼저 조사 당하는 것이 형상 디자인이다. 전체의 모양은 물론이지만, 부분적인 형상으로서 모서리나 바닥 면 등 극히 일부분의 형상만 가지고도 특허권을 제시하여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각판재는 입방체로서 12개 모서리가 있는데 프레스 금형으로 찍어 성형 제작하



정 수 철 원장
요업 기술 원

면 입방체의 12개 모서리가 서로 부딪힐 때 모서리의 날카로운 끝 부분이 상하는 것을 막고, 취급할 때에 손을 베이지 않게 하거나 하기 위해, 끝 부분을 약간 둥그롭게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라 볼 수 없을 정도의 상식이지만, 이런 부분을 특허침해라 하여 침해소송을 당하면,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해야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의 위력이다. 상식이라 무시하고 특허출원을 간과하고 평소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셈이 되는 것이다.

프레스 가공할 때 각진 사각 금형으로부터 찍혀 나오면, 당연히 칼날 같기 때문에 약간의 각도를 주어서 금형 제작도 쉽고, 나온 제품의 모서리도 무디어져, 위험하지도 않으니, 누구나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자연히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지만, 이런 사소한 사항을 먼저 특허로 확보한 사람이나 회사는 모서리의 각도를 재어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어 기술료를 크게 챙기는 것이다. 첨단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패키지에서 이런 특허를 보고 왜 이런 사소한 것을 특허로 인정했을까 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갖은 생각을 다하며 수일간 고심한 적이 있다.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부분을, 금형과 사각판재 형상제품의 모서리 각도에 따른 영향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그 효과를 주장하여 특허로 인정받은 것을 보고, 황당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간과하기 쉬운 이런 기술을 특허로 제출하는 지적재산권의 문화에 빨리 적응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장비나 공정기술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성향이 강하고, 대부분 구입 제작이기 때문에 2차 적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판매도 마케팅의 큰 부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 관련 특허분쟁도 많아질 것이다.

소재부품 중 세라믹이나 합금 등의 제품들은 대부분 여러 성분의 비로 물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배합비나 조성물의 특허가 많다. 목적의 물성을 발현시켜주는 조성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성물에 관한 특허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으며, 저촉된 경우 그 치명타는 매우 크다. 재료선정이나 배합비등은 상당한 실험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성 등을 확인 제시하는 전문가다운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 가치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되어 그럴싸하지만, 침해소송을 당하는 확률은 앞서 언급한 형상에 비해 적을 수 있다.

극미량 넣어 최종적으로 검출이 어려운 성분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성분도 형상을 달리 했다거나 등등이 있어, 상대방도 정밀 분석을 하여 확증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형상처럼 일목요연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문제가 되면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서 문제를 피할 수 있으나, 이런 해결책은 원천기술의 확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특허라 함은 아주 하이테크의 신기술이어야 할 것이라고 부담스러워하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아직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상식적인 기술분야가 많다는 것을 알고, 특허에 한발 다가가 보다 친숙해진 특허 생활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문화가 앞으로 닥칠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발특 2003/6